



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격리해제에 대한 통지의무 및 권리구제 등〉

■ 백종헌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6212호)

2026. 3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박동찬

목 차

I . 개요	1
II . 검토 의견	2
1. 개정안의 주요내용	2
2. 주요 검토사항	4
3.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10

I . 개요

1.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백중헌의원 등 12인

(2) 제 안 일 : 2026. 1. 21.

(3) 회 부 일 : 2026. 1. 22.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감염병 전파차단을 위해 방역조치가 시행될 경우 대상자가 되는 감염병의심자의 정의를 구체화하고 격리해제 시 통지의무 및 권리구제 수단을 신설하여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량발생 시 방역과 인권의 양립 가능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것임(안 제2조제15호의2 등).

II. 검토 의견

1. 개정안의 주요내용

- 개정안은 감염병의심자의 정의를 보다 구체화하고, 입원 또는 격리조치된 감염병환자등이나 감염병의심자에 대한 격리 사유가 없어진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대상자에게 통지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격리조치가 해제되지 않는 경우에 대한 권리구제 수단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5호의2, 제43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5. (생략) 15의2. “감염병의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이하 “감염병환자등”이라 한다)와 <u>접촉하거나 접촉의 의심되는 사람</u> (이하 “접촉자”라 한다) 나.·다. (생략) 16. ~ 21. (생략)	제2조(정의) ----- -----. 1. ~ 15. (현행과 같음) 15의2. ----- ----- -----. 가. ----- ----- ----- --- <u>전과가능 기간 내에 접촉하거나 역학적 연관성이 있어 감염이 우려되는</u> ----- 나.·다. (현행과 같음) 16. ~ 21. (현행과 같음)

제43조의2(격리자에 대한 격리 통
지) ① (생 략)

<신 설>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의 방법 ·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3조의2(격리자에 대한 격리 및
해제 통지) ① (현행과 같음)

②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
41조, 제42조제2항·제3항 및
제7항, 제47조제3호 또는 제49
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입원 또
는 격리 조치 사유가 없어진 경
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격리
대상자와 그 보호자에게 통지하
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격리 조치가 해제되
지 아니하는 경우 격리 대상자
및 조사거부자는 구제청구를 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 등
에 대해서는 「인신보호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격리 대상자
및 조사거부자”는 “피수용자”로,
격리 조치를 명한 “질병관리청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
수·구청장”은 “수용자”로 본다
(다만, 「인신보호법」 제6조제
1항제3호는 적용을 제외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

-----.

2. 주요 검토사항

가. 감염병의심자에 대한 정의 규정 구체화

- 현행법 제2조제15호의2는 ‘감염병의심자’를 가.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¹⁾ 및 병원체보유자²⁾(이하 “감염병환자등”이라 함)와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 나. 검역관리지역이나 중점검역관리 지역에 체류하거나 경유한 사람으로서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다. 감염병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음.
- 개정안은 제2조제15호의2가목 중 ‘감염병환자등과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을 ‘전파가능 기간 내에 접촉하거나 역학적 연관성이 있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으로 변경하여 감염병의심자를 구체적으로 정의하려는 것임.

< 감염병의심자 정의에 대한 현행 및 개정안 비교 >

현행	개정안
가.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와 <u>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는</u> 사람	나.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와 <u>전파가능 기간 내에 접촉하거나 역학적 연관성이 있어 감염이 우려되는</u> 사람

- 이는 감염병의심자로 판단되면 입원격리 및 자가격리, 감염여부 검사, 인적사항 및 위치정보의 제공 등과 같은 의무가 부과되고, 이를 거부하거나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1) **감염병의사환자**: 감염병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이 되나 감염병환자로 확인되기 전 단계에 있는 사람(「감염병예방법」 제2조제14호)

2) **병원체보유자**: 임상적인 증상은 없으나 감염병병원체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감염병예방법」 제2조제15호)

고, 감염병의심자에 대한 개념이 모호하고 추상적이어서 방역당국의 판단에 따라 그 범위가 광범위하게 확장될 우려가 있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로 보임.

< 감염병의심자에 대한 의무 부과 및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

의무 부과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자가치료, 시설치료 또는 의료기관 입원치료(제41조제2항제3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제79조의3제3호)
(1급 감염병 발생 시) 자가 또는 시설 격리, 이동수단의 제한, 감염병 증상 유무 확인, 위치정보 수집, 감염 여부 검사(제42조제2항)	· (자가 또는 시설격리 위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제79조의3제4호) · (그 밖의 의무 위반) 300만원 이하의 벌금(제80조제5호)
(감염병 유행 시) 일정기간 입원 또는 격리(제47조제3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제79조의3제5호)
(감염병 예방을 위한 목적) 일정기간 입원 또는 격리(제49조제1항제14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제79조의3제5호)
공공기관 및 지자체, 의료기관 및 약국, 전기통신사업자, 개인 등에 대하여 감염병의심자에 관한 다음의 자료 요청 (제76조의2제1항 및 제2항) · 성명·주민번호·주소·전화번호 등의 인적사항 · 처방전 및 진료기록부 등 ·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정보 · 진료이력, 투약정보, 상병내역 등 · 출입국관리기록 · 위치정보 · 그 밖에 이동경로를 파악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자료 요청자에 대하여 부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제79조의2제4호 및 제5호)

□ 개정안으로 인해 감염병의심자의 범위가 보다 명확(전파가능 기간 내에 접촉, 역학적 연관성에 따른 감염 우려)해지고, 판단 기준 또한 세분화됨에 따라 감염병의심자 분류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개정안에 따른 경우 감염병의심자 판단기준 >

현행	개정안
감염병환자등과 접촉하였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경우: 아래의 기준을 고려하여 판단 · (거리 및 공간) 확진자와 같은 공간, 밀접한 거리에 있는 경우 · (접촉 정도 및 시간) 확진자와 대화, 신체적 접촉(악수, 포옹 등)이 있는 경우 · (개인 보호구 착용 여부) 확진자와 접촉자 모두 개인 보호구(마스크, 장갑 등)를 제대로 착용했는지 여부	감염병환자등과 <u>전파가능 기간</u> 내에 접촉한 경우: 감염병환자등과 접촉하였더라도 <u>감염병별 잠복기 및 전염기간</u> 등을 고려하여 판단 ※ 주요 감염병의 잠복기 및 전염기간: [참고자료 1] <u>역학적 연관성이 있어 감염이 우려되는 경우:</u> 아래의 기준을 고려하여 판단 · (시간적 연관성) 확진자와 동일 시간대에 노출 여부 · (공간적 연관성) 체류 당시 확진자와의 거리, 공간적 특성(환기상태, 공조 시스템 운영 여부 등) 고려 · (인적 연관성) 착용한 개인 보호구의 바이러스 차단 정도 및 착용 상태(마스크 종류, 마스크 착용시 코와 입을 완전히 가렸는지 여부 등), 확진자의 증상(기침, 재채기 등), 활동력, 집단시설(학교 등) 생활 여부 등

자료: 질병관리청

□ 참고로 국가인권위원회 또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권고문(2022. 11. 1.)에서 감염병의심자 중 ‘감염병환자등과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 규정은 개념이 추상적이고 모호하여 이들을 강제처분의 대상으로 규율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감염병의심자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도록 권고한 바 있음.

<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권고] 2022. 11. 1.

■ **주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의2가목의 감염병의심자 중 ‘감염병환자등과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은 그 개념이 추상적이고 모호하여 이들을 강제처분의 대상으로 규율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는 등 감염병의심자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감염병의심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할 것

- ‘감염병환자등과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은 그 개념이 지나치게 모호하고 추상적이다. 접촉 의심자에는 역학조사 결과 감염병환자등과 접촉의 개연성이 인정되는 사람만이 아니라, 접촉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사람도 특별한 근거 없이 막연히 접촉여부가 의심이 된다는 이유로 포함될 여지가 있으므로 방역당국의 판단에 따라 그 범위가 광범위하게 확장될 우려가 있다.*

* 실제로 서울시는 2020.5. 이태원 클럽 감염 발생 당시 관련 접촉자와 2020.8.15. 광화문 집회 참석자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동 시간대에 이태원 일대에 있던 사람 10,905명과 광화문 집회 당시 현장 주변에 있었던 사람 10,576명을 감염병의심자로 분류하여 통신 기지국 접속 기록을 통해 위치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수집하였다. 당시 이태원과 광화문 집회 인근에 있다가 위치정보 등이 수집된 사람 중 대다수는 감염병환자 등과의 접촉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 사람들이다.

(중 략)

- 단순히 접촉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그 사람의 동선을 추적하거나, 격리조치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방역당국이 감염병의심자의 범위를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광범위한 사람의 동선을 추적하거나, 필요 이상의 격리 처분 등을 할 가능성을 방지하기 어렵다. 즉, ‘감염병환자등과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은 그 개념이 추상적이고 모호하여 이들을 강제처분의 대상으로 규율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나. 격리해제 시 통지의무 및 권리구제 수단

□ 개정안은 입원 또는 격리 조치 중인 감염병환자등이나 감염병의심

자에 대하여 입원 또는 격리 조치 사유가 없어진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격리 대상자와 보호자에게 통지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격리 조치가 해제되지 않을 때는 격리 대상자 및 조사거부자가 「인신보호법」을 준용하여 구제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43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 구체적으로 개정안에 따른 격리 해제 통지 대상자(보호자 포함)는 ‘자가치료·시설치료·입원치료 중인 감염병환자등’과 ‘자가치료·시설치료·입원치료 및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 중인 감염병의심자’, ‘질병관리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조사나 진찰, 감염 여부 등의 검사를 거부하여 자가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 격리된 조사거부자’로서 입원 또는 격리 조치 사유가 없어진 대상자임.

< 개정안에 따른 격리 해제 통지 대상자 및 사유 >

통지 대상자	통지 사유
감염병환자등	자가치료, 시설치료, 입원치료를 받는 중에 입원 사유가 없어진 경우
감염병의심자	자가치료, 시설치료, 입원치료를 받고 있거나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 중에 입원 또는 격리 사유가 없어진 경우
조사거부자	질병관리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조사나 진찰, 감염 여부 등의 검사를 거부하여 자가 또는 감염병관리시설 격리 중에 격리 사유가 없어진 경우

- 또한, 개정안 제3항은 격리 조치가 해제되지 않을 경우의 구제절차를 「인신보호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 당사자는 관할 법원을 통해 격리의 임시해제 또는 해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인신보호법」에 따른 구제 절차 >

구분	내용
구제청구	피수용자 또는 수용시설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구제 청구
청구 방식	구제청구자의 주소 및 성명, 피수용자의 성명, 청구의 요지, 수용이 위법한 사유, 수용 장소 등을 기재하여 서면 청구
수용의 임시해제	법원은 신체의 위해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직권 또는 구제청구자의 신청에 따라 수용의 임시해제 가능
변호인 선임	구제청구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
수용해제 결정	법원은 구제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결정으로 피수용자의 수용을 즉시 해제할 것을 명하여야 함

□ 이는 격리 대상자에게 해제 사실을 명확히 통지함으로써 신속한 일상 복귀를 지원하고, 국가적 방역 위기 상황에서도 개인의 신체적 자유와 인권이 법적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됨.

□ 다만, 개정안 제43조의2제2항에 따르면 해제통지는 입원 또는 격리조치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 취하는 것이므로, 해제 통지 대상자를 ‘입원 또는 격리 대상자’로 용어를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동 법 제42조제8항3)에서는 질병관리청장 등이 격리 해제 통지와 함께 격리 조치를 즉시 해제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3) 「감염병 예방법」 제42조(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① ~ ⑦ (생략)

⑧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의심자 또는 조사거부자가 감염병환자등이 아닌 것으로 인정되면 제2항 또는 제7항에 따른 격리 조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⑨ (생략)

⑩ 제8항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격리 조치가 해제되지 아니하는 경우 감염병의심자 및 조사거부자는 구제청구를 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인신보호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감염병의심자 및 조사거부자”는 “피수용자”로, 격리 조치를 명한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용자”로 본다(다만, 「인신보호법」 제6조제1항제3호는 적용을 제외한다).

3.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1) 질병관리청 (수용)

□ 본 개정안은 코로나19 당시 감염병의심자에 대한 개념이 모호하여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정 권고를 반영

□ 또한, 현재 시행규칙 서식* 상으로만 명시되어 있는 격리자 입원·격리 해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보강하고 격리 미해제 시 인신보호법을 준용토록 하는 등 격리자의 권리 보호 취지에 공감

* 시행규칙 상 입원·격리 사실 확인서 서식: [참고자료 2]

2) 대한의사협회 (수용)

□ 동 개정안은 감염병 의심자의 정의를 구체화하고 격리 해제 통지 의무 및 권리구제 절차를 명시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방역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므로 동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 찬성함.

□ 다만,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실효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서는 ‘역학적 연관성’ 또는 ‘격리 조치 사유 소멸 기준’ 등의 해석이 모호할 수 있으므로, 하위법령의 세부 기준 마련 시 의료 전문가 단체와 충분히 협의하여 명확한 지침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3)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의견 없음)

- ☐ 제2조제15호의2 개정의 경우 감염병의심자를 보다 좁고 구체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보이는 바, 별도 의견 없음.
- ☐ 제43조의2제1항의 격리자에 대한 격리 규정에 더하여 제2항은 해제 통지에 관한 규정이 신설된 것으로 보이므로 별도 의견 없음.

문 의 처
02)6788-5496

【참고 1】	주요 감염병의 잠복기 및 전염기간
---------------	---------------------------

구분	질병명	잠복기	전염기간
제1급	에볼라바이러스병	2~21일	증상 발현 후 증상기간 동안(회복 후 전염기간은 불명확)
	니파바이러스감염증	4~14일	증상 발현 후 증상기간 동안
	페스트	1~7일	객담이나 림프절 종창에서 균이 배출되는 기간 동안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2~14일	증상 발현시부터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2~10일	증상 발현시부터
제2급	결핵	불명확	결핵 증상유무, 객담 도말검사결과, 흉부X선 상 공동유무 등에 따라 다르며 증상시작일(증상이 없는 경우 검사일 기준) 4주~3개월 이전부터 효과적인 치료 시작 2주 이후까지
	수두	10~21일 (평균 14~16일)	발진 시작 1-2일 전부터 모든 피부 병변에 가피가 생길 때까지
	홍역	7~21일 (평균 10~12일)	발진 시작 후 4일까지 격리
	콜레라	수시간~5일 (보통 2~3일)	설사 증상 소실되고, 항생제 치료 완료 48시간 후 24시간 간격 대변배양검사를 실시하여 2회 연속 음성 확인 시까지 격리
제3급	B형간염	60~150일 (평균 90일)	HBsAg 양성인 사람의 경우 감염이 가능함
	C형간염	2주~6개월 (평균 6~10주)	혈액에서 RNA가 검출되는 시기
	후천성면역결핍증 (AIDS)	평균 8~10년	환자 혈액 및 체액 노출에 따른 전파 가능성 존재 (감염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양의 바이러스가 혈류로 들어갔을 때 감염 가능)
제4급	인플루엔자	1~4일 (평균 2일)	증상발생 1일전부터 발병 후 약 5~7일까지
	요충증	1~2월	충란은 숙웃, 침구에 붙어서 2~3주 감염력 유지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 감염증	불명확	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와의 접촉, 체액 등에 오염된 기구나 물품 및 환경표면 등을 통해 전파 가능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1~14일 (평균 5~7일)	주된 전파경로는 감염자의 호흡기 침방울(비말)에 의한 전파, 비말 이외 표면접촉, 공기 등을 통해서도 전파 가능

자료: 질병관리청

【참고 2】 입원·격리 사실 확인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2서식] <신설 2023. 12. 29.>

입원 · 격리 사실확인서

Confirmation of Hospitalization · Isolation/Quarantine

[] 입원 · 격리중 · [] 입원 · 격리해제

In Hospitalization · Isolation/Quarantine		Release from Hospitalization · Isolation/Quarantine			
인적정보 Personal Information	성명 Name		생년월일 Date of Birth		
	성 Family name	이름 Given name	연yyyy	월mm	일dd
입원 · 격리 사실내용 Details	사유 Reasons				
	사실확인 Hospitalization · Isolation/ Quarantine : In or Release	시행일 Start Date			
		해제일 End Date			
	발급용도 Purpose of Issue				

상기인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따른 입원 · 격리중이거나 입원 · 격리해제되었음을 확인합니다.

This is to confirm that the person named above is in or has been released from hospitalization or isolation/quarantine as per Article 43 and 43-2 of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년 yyyy 월 mm 일 dd

질병관리청장,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

직인

Commissioner of KDCA, Mayor of City, Governor of Province,
or The head of Si/Gun/Gu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